## [청구인] 〇〇〇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 ○○. ○○. 청구인에게 한 「**사회보장** 급여 결정」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〇. 〇. 〇〇.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사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급여)(이하 '사회보장급여'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회보장급여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조회 실시결과 〇〇〇과 청구인 사이에서 전세임대차계약에기해 2020. 4.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가 부여된 사실을 발견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원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기한을 연장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202○. ○.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민센터의 확정일자 말소가능여부에 대한 회신공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내용으로는 공적자료의 소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 ○.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 ○. ○. 확정일 자를 받았을 뿐이다. 그 후 ○○○의 주택매매계약이 무산되어 청구인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지도 않았고,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므로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라면 청구인이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행정복지센터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허위임을 밝히고 확정일자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확정일자 말소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그 회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해당일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뿐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확정일자의 존재만으로 청구인에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보장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조회하면 청구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 적도 없으며,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도 금융자료 조회를 하지 않았고, ○○○에게 전화통화만 해보아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데도 전화조차 하지 않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사회보장급여의 선정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판단하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조회된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조사를 하였다. 피청구인에게는 공적자료의 진위여부를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만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된 소득이나 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공적자료가 수정된 경우에만 수정된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청구인에게 확정일자를 부여한 주민센터는 확정일자의 사후적 말소 정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는바, 공적자료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이고 청구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만을 믿고 명확한 소명자료 없이 조사자료를 수정하는 것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청구인의 재산으로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보호자인 자녀의 연락처를 찾아내어 사회보장급여 지급대상 제외통지 예정임을 안내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한 후 조사기한을 1회 연장해주는 등 소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라. 피청구인이 조회요청을 할 수 있는 청구인의 금융재산 범위는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일 뿐 모든 기간의 금융정보를 직접 조회할 권한이 없 어 청구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의 대출 실행 여부 또는 통장에 입금된 자료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소 명자료 없이 관련인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조사를 하고 급여결정을 한다면 공정 과 청렴의 가치를 해치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

## 가. 관계법령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과의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 2) 청구인은 ○○○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 ○. ○.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청구인은 확정일자만을 받았고, 위 주 택에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 3) 그런데 ○○○이 자금사정이 되지 않아 해당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했고,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으로 이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으로부터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을 상환한 후, 202○. ○. ○○. 새로운 임대 인 ○○○과의 사이에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 주하고 있다.
- 4) 청구인은 202○. ○.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조회 실시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 ○○○원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기한을 연장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을 안내하였다.
- 5) 청구인은 202〇. ○.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주민센터의 확정일자 말소가능여부에 대한 공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조회하거나 ○○○에게 임대차계약의 허위성에 대해 확인을 하는 등의 추가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대로 금융자료를 조회할 권한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적자료의 소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 ○. ○○.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 ○. ○○. 우리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동 주민센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시스템상 최근 6개월 이내의 금융자료조회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다. 판 단

#### 1)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에 의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 득, 이전소득을 합한 실제소득에서 지출요인을 감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 우 위 법률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신청자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35조는 신청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와 실제 소득, 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만을 요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면 이는 계약서상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해 202〇. 〇. ○.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이 ○○○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이며 청구인이 ○○○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과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것은 부동산 매수 예정자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의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과 같다. 그리고 청구인스스로도 이 사건 신청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없어"라고 기재한 것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주택 매수를 돕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해당일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뿐 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확정일자의 존재만으로 청구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회보장급여 신청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조회 결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있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할 뿐,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었는지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조회된 소득과 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 상의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가 부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위확정일자 부여를 정정하거나 확정일자의 존재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라) 더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의 조회 결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이 사건 임대 차계약서가 존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상 태라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처럼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 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에서도 보증금의 ○○%를 대출로 해결한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부채내역서, 대출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동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회신서만을 제출했을 뿐, 스스로 발급이 가능한 금융거래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피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청구인에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마)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 이 있고, ○○○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부실한 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전체 기간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직접적인 권한은 없고, 최근 3개월 이내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신청을할 수 있을 뿐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기해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202○. ○. 초의 청구인의 대출내역,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한데, 피청구인의 권한으로 위 기간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대로 ○○○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청구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보유여부는 대출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신력이없는 일반인인 ○○○에 대한 전화 사실조사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청구인의 자녀의 연락처를 찾아청구인에게 사회복지급여 대상제외 통지 계획을 알리고, 소명자료의 제출을 안내하며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으며, 조사기한이 임박하자 1회에걸쳐 이를 연장해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부실한 조사를 하였다고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